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0
----------	----

2018. 10. 15. (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김영주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18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2018년 10월 4일

라. 상정일자: 2018년 10월 15일

(제3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영주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잇따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의 평화와
중전, 그리고 통일을 실현시켜 나갈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의 필요
성이 부각됨.

- 이에 따라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해,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 함양 및 통일준비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통일교육 추진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통일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 통일교육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재정지원(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충환)

-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 통하여,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준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2018년도 들어 4.27, 5.26 1, 2차 남북정상회담과 6.12북미정상회담, 그리고 9.18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이 완화되면서 종전과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 임.

-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미래 통일시대를 이끌어 갈 주역인 학생들에게 평화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종전, 통일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통일역량 증진은 매우 중요하다 사료됨.
- 안 제3조에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다양한 사업추진 계획을 명시한 것과 안 제7조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규정한 것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 지원을 구체화하여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통일관과 통일준비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통일교육 기본방향 및 목표
2. 통일교육 관련 자료 개발·활용 방안
3. 통일교육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안

4. 통일교육 연구회 및 학생동아리 운영 방안
5. 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 방안
6. 통일교육 관련 행사 개최 방안
7. 통일교육 교직원연수 방안
8. 통일교육 협력체계 구축 방안
9. 그 밖에 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교육청 통일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통일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통일교육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및 행사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추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는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09.10.1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8.3.13.>]

[시행일 : 2018.9.14.] 제4조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 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2011.7.28., 2013.3.23., 2013.8.13.>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④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 2018.9.14.] 제8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 관련: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 3항 및 제8조

2. 비용 발생 요인

- 평화통일교육지원체제 구축 및 평화통일교육교원전문성 강화
- 유관기관 교육행사 지원

3. 관련조문

-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조례안」 제4조 및 제7조

제4조(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 9 생략

제7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추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19년 평화통일교육 운영비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평화통일교육 연간 운영비 추계		연도별 운영비 추계					
산출기초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1. 평화통일교육	198,660	198,660	198,660	198,660	198,660	198,660	993,300
가. 평화통일교육지원체제구축	6,800	6,800	6,800	6,800	6,800	6,800	34,000
나. 평화통일교육교원전문성강화	107,140	107,140	107,140	107,140	107,140	107,140	535,700
다. 충북평화통일이야기한마당	24,720	24,720	24,720	24,720	24,720	24,720	123,600
라. 평화통일교육교육공동체공감대확산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198,660	198,660	198,660	198,660	198,660	993,300	
보통교부금	198,660	198,660	198,660	198,660	198,660	993,300	
세 출	198,660	198,660	198,660	198,660	198,660	993,300	
평화통일교육지원체제구축	6,800	6,800	6,800	6,800	6,800	34,000	
평화통일교육교원전문성강화	107,140	107,140	107,140	107,140	107,140	535,700	
충북평화통일이야기 한마당	24,720	24,720	24,720	24,720	24,720	123,600	
평화통일교육교육공동체공감대확산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재원 조달	198,660	198,660	198,660	198,660	198,660	993,300	
의존 재원	소 계	198,660	198,660	198,660	198,660	198,660	993,300
	국고보조금						0
	보통교부금	198,660	198,660	198,660	198,660	198,660	993,300
	특별교부금						0
자체 수입	소 계						0
	자체수입						0
지방채						0	
기 금						0	
기타(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0	